

의안번호	제 339 호
의 결	2009년 월 일
연 월 일	(제 279 회)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4월 8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4월 8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건설공사 시행사(시공사)가 도내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
약정하거나 도내 생산자재 사용을 약정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
기여할 경우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
품질시험 대행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품질시험수수료
징수조례를 일부 개정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수수료의 면제 근거조항 마련(안 제5조)
 -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를 충청북도내
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(시공사)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 면제
 1.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30%이상 약정한 업체
 2.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을 50%이상 약정한 업체
 3.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%이상 구매·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 4.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비를 60%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- 투자협약 미 이행업체에 대한 시험수수료 강제징수규정 마련(안 제6조)
- 용어의 정비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(안 제1조)
 - 수수료의 감면 → 수수료의 면제(안 제5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09. 2. 27 ~ 3. 18(20일간)
- 나. 부패영향평가 : 감사관실 협의 이견없음
- 다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과 같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
2.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공사를 충청북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
 - 가.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30%이상 약정한 업체
 - 나.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을 50%이상 약정한 업체
 - 다.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%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 - 라.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비를 60%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
제6조를 제7조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수수료의 징수) ① 제5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가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해당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,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수료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 및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</p> <p>제5조(수수료의 감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와 그 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5조(수수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2.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를 충청북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30%이상 약정한 업체 나.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을 50%이상 약정한 업체 다.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%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 라.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비를 60%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설></u></p> <p><u>제6조(수수료의 징수)</u> ① 제5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가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해당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,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수료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</p>	
<u>제6조(시행규칙)</u> (생략)	<u>제7조(시행규칙)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

관 련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39조 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
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□ 건설기술관리법

제24조(건설공사의 품질관리)

-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(이하 "품질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□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

제40조 (품질관리의 지도·감독 등)

-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(이하 이 장에서 "발주자"라 한다)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(자재·부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설계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- ⑤ 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수행여부의 확인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·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□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

제19조 (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)

① 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,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. 다만,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·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.

□ 지방세법

제28조 (체납처분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.

1.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(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)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
2.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기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

②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.